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06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허성무·김문수·정혜경

최민희 • 문정복 • 민병덕

송재봉 • 손명수 • 이수진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등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

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 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 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및 제6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 및 제12조).
- 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대체산업 등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후 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 및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설비의 폐지 또는 석탄발 전량 제약 등을 말한다.
-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 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5.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 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 및 관련 협력업체에 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7.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8. "대체산업사업자"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투자,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석 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
 - 2.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 3. 제10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실시
 - 4. 제11조에 따른 소득지원 등 지원
 - 5.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 등 지원
 - 6. 제13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 7. 제14조에 따른 대체산업 등의 지원

- 8. 제15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
- 9.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 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4. 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 ④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⑧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위하여 갈등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주민참여)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 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 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2.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 3. 인구·산업·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 4.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소득지원 등)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 여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5 년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소득보조금의 지급기간, 지급대

- 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②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제13조(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각 호의 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대체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및 전년도 평가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보조금의 소급적용)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보조금은 이 법 시행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